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498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.

발 의 자:진성준·김영진·안태준

황정아 • 이기헌 • 이재정

위성곤 • 문진석 • 박홍근

김태년 · 허 영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가 보유한 항공기,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·연구·전시하여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·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「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별표 제219호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 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49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제2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9「국립항공박물관법」	제11조의2	사용료등의	감면,	장	2034.	12.	31.
		기사용허가등	두 및 양	여			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